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2018. 10. 24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11일

(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소방본부장 권대운)

가. 제안이유

- 다수인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으로 화재안전기반을 조성하고,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개정하여 도민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가. 목적(안 제1조)

-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목적

○ 포상금 등 지급 대상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‘다중이용업소’ 추가(안 제3조)

○ 포상금 등의 지급(안 제7조)

-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(월 50만원,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, 영화관, 학원,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 안전의식과 신고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단순히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향상

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였음.

- 안 제3조는 포상금 등 지급대상을 기존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까지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비상구 관리를 통해 화재예방과 대피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였음.
- 안 제7조는 현행 신고횟수에 따라 현금, 상품권, 소방물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-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과거의 예로 볼 때 현금지급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던 측면 그리고 화재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, 필요한 재원은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 예고(`18. 8. 31.~`18. 9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 안전의식과 신고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1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 - 가. 문화 및 집회시설
 - 나.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)
 - 다. 운수시설
 - 라. 숙박시설

마. 위락시설

바. 복합건축물(나목이나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
2. 다중이용업소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영업)

제3조제2항제2호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비

상구를 폐쇄·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
제7조제2항 후단 중 “입금하며,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”를 “입금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포상금 등”을 “포상금”으로, “월간 30만원, 연간 300만원”을 “월간 50만원, 연간 500만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에 따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포상금 등 지급 대상)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(이하 “포상금 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「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문화 및 집회시설 2.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.) 3. 운수시설 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포상금 등 지급 대상)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시설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문화 및 집회시설 나.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.)

관련법령 발췌

□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·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한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

제10조(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「건축법」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, 내부 마감재료 등(이하 "방화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2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

하는 행위
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4. 그 밖에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
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9조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)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
2. 밀폐구조의 영업장

제11조(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)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「건축법」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, 내부 마감재료 등(이하 "방화시설"이라 한다)을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**

1. 사업개요

-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상금 지급회수 및 방법, 제한을 일부 개정하여 위반행위 지속 단속을 통한 비상구 개방 의식 정착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
 - ※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 ~ 300만원 부과

3. 관련조문

- 안 제7조(포상금 등의 지급)
 -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, 월 50만원,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
- 나. 추계의 전제 : 비상구 신고포상금 운영현황

지급년도	편성예산(천원)	지급금액(천원)	지급건수(건)	비고
2012년	5,000	3,600	72	
2013년	5,000	1,200	24	
2014년	3,000	300	7	
2015년	3,000	0	0	
2016년	3,000	100	2	
2017년	3,000	0	0	

※ 동일인이 신고시 지급 제한에 따라 신고포상금 현황 감소

다. 추 계 결 과 : '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86,000천원 정도 소요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
세 출	86,000	6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
신고 포상금	86,000	6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

6. 작성자 :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익수